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제조물 결함 관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품질경영학회 제품안전연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특정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건설업체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제조업체는 이미 대비하고 있겠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 이외에도 『중대시민재해』라 하여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위험성을 가진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특히 유의하셔서 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분야의 경영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I. 처벌법의 주요내용

1. 중대시민재해 대상제품: (법2조)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제조물은 기존 제조물책임법의 정의와 같으므로 모든 공산품이 해당함)
2. 대상재해: 사망 또는 10명 이상의 중상자(2개월 이상 치료 등)(법2조)
3. 처벌대상: (법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해당 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기업 전부 해당)
4. 처벌의 요건: (법9조)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처벌수준: (법10조)
사망자 발생 시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6. 기타 처벌조항: 기업의 양벌규정(법11조) 및 5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15조)

II. 기업의 대응방안(요점): 법9조의 안전확보의무 참조

1. 제품안전 관리체제 점검

일반적으로 ISO9001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를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분야는 ISO45001이나 KOSHA-MS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을 포함하는 품질인증(자동차의 IATF16949 등)으로 제품안전 분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귀사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점검

기업규모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재발방지조치,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명령 이행조치 등의 적절성 점검

위의 내용을 점검하시어 27일부터 시행되는 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학회 제품안전연구회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부회장/제품안전연구회장 드림

(연락처: davidlee82@naver.com)

[참고자료]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환경부 해설자료